



#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 결 정 문

---

사건번호: KR-0700015  
신청인: 에프엔씨코오롱주식회사  
피신청인: James Maurice

---

###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에프엔씨코오롱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45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15 한국타이어빌딩 3층

피신청인: James Maurice, 111, MULTIMEDIA CONCEPT, 137130 DE

분쟁도메인이름은 “kolonsport.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식회사 사이덴터티(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26 성문빌딩 6층)에 등록되어 있다.

###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의 2007년 1월 23일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07년 1월 23일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7년 1월 23일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07년 1월 24일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 (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07년 1월 24일 센터는 “신청서 전송 표지” 를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 기일을 2007년 2월 13일임을 통지하였다.

2007년 2월 15일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을 통지하였다.

2007년 2월 16일 센터는 이 사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1인 조정부로서 남호현 조정위원을 선임하였고 조정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적법하게 조정부를 2007년 2월 23일 구성하였다.

### 3. 사실관계

신청인은  (한국 등록 제137984호, 제138869호, 제144147호, 제142231호 및 제143734호), **KOLON SPORT** (한국 등록 제641479호, 655204호, 제653900호 및 제650736호),  (한국 등록 제261387호, 제259471호, 제259492호, 제259473호 및 제263443호) 등을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상표로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자이며 위 상표들을 이용하여 등산화, 의류, 등산장비 등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이 사건 도메인이름인 '코오롱스포츠'(kolonsport)는 신청인의 등록 상표이며, 한국, 중국 등 외국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청인의 대표적인 브랜드이다.

신청인은 1973년경 처음 등산의류와 용품을 선보이고 레저문화를 보급시킨 이후로 산악원정대 후원, 등산학교 운영, 클라이밍 및 트래킹 후원, 비치발리볼 대회 및 MTB 대회 지원, 스키 및 스노보드 후원, 환경보호캠페인(그린 마운틴 봉사단) 전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코오롱스포츠'를 일반인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신청인은 2004년 약 12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신청인의 '코오롱스포츠' 브랜드는 2003년 말 전국 52개 백화점의 바이어들과 영업 담당자, 스토어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파워 조사에서 스포츠

아웃도어 부분 황금트로피를 차지하고, 2006년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등산복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하였다.

신청인은 잡지, 신문, TV, 라디오, 케이블방송 등의 각종 매체들을 통해 '코오롱스포츠'를 광고해 왔다. 신청인은 많은 광고비를 들여 KBS, MBC, SBS, OCN, 와이티엔, SBS골프채널, CH CGV, MBC 드라마넷 등의 전국적인 방송 매체를 통해 코오롱스포츠에 대한 TV 및 라디오 광고를 수행한 바 있다.

신청인은 현재 약 126개의 백화점, 특약점 또는 직영점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오롱스포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신청인은 한국은 물론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코오롱스포츠'를 이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신청인은 미국을 비롯한 29개 국가에 코오롱스포츠 관련 상표를 출원, 등록하고 있으며 2006년 9월경부터 중국에 진출하여 백화점 매장을 오픈 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2007년 1월 20일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을 전 등록자인 '강덕호'로부터 취득하였다. 신청인이 2007년 1월 19일 이 사건도메인의 등록명의자 이었던 강덕호를 상대로 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신청을 하자, 강덕호는 이 사건 도메인의 등록명의를 피신청인으로 변경하였다. 전 등록자 '강덕호' 나 피신청인 모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도메인을 인터넷주소창에 입력해서 검색을 수행하면,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몇몇 링크들만 나열되어 있는 웹 페이지가 컴퓨터 이용자의 화면에 표시되고, 이 웹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들은 영화, 우산, 관측물 등이다.

#### 4. 당사자들의 주장

##### A. 신청인

1) 이 사건 도메인의 등록자가 '강덕호'로 되어 있어 신청인은 2007년 1월 19일 '강덕호'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여 도메인이름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강덕호는 2007년 1월 20일 신청서 부분을 수령하자마자 이 사건 도메인의 등록명의를 James Maurice로 변경하였으므로 신

청인은 James Maurice를 피신청인으로 하였다.

2) 이 사건 도메인은 신청인의 등록상표 또는 주지·저명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혼동스러울 정도로 극히 유사한 것이다(규정 제4조 (a)(i)).

이 사건 도메인은 kolonsport.com로서 신청인의 등록상표들인

코올롱스포츠  
KOLON SPORT,

KOLON SPORT,



와 신청인의 주지·저명한 표지인 코올롱스포츠(KOLONSPORT)와 비교해 볼 때 호칭이나 외형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극히 유사하다.

3)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나 합법적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다.(규정 제4조 (a)(ii)).

신청인이 2007년 1월 19일 이 사건 도메인의 등록명의자였던 강덕호를 상대로 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신청을 제출하자, 강덕호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틈을 타서 이 사건 도메인의 등록명의를 피신청인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등록명의의 변경은 강덕호와 피신청인이 공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분쟁조정을 회피하고자 단순히 등록명의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피신청인은 강덕호가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이거나, 강덕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강덕호와 공모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신청인의 도메인등록을 방해하려는 자임이 분명하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도메인의 등록자였던 강덕호는 2003년 5월 4일 이 사건 도메인을 등록한 이후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사업도 수행한 적이 없는 자이다. 이 사건 도메인을 인터넷주소창에 입력해서 검색을 수행하면,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몇몇 링크들만 나열되어 있는 웹 페이지가 컴퓨터 이용자의 화면에 표시될 뿐이었고, 이 웹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들은 영화, 우산, 관측물 등과 같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4) 피신청인과 강덕호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규정 제4조 (a)(iii)).

코오롱스포츠(kolonsport)는 신청인이 1973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해 온 대표적인 아웃도어 브랜드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신청인의 표지이다. 강덕호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03년 5월 4일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고, 그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된 2007년 1월 20일까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어떠한 사업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을 알고서 곧바로 이 사건 도메인의 등록명의만 피신청인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 사건 도메인의 등록명의가 피신청인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이 사건 도메인을 이용해 검색을 수행하면 한글로 된 이루어진 광고 사이트(www.com.co.kr)로 자동적으로 연결될 뿐이며,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상품이나 서비스는 판매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피신청인과 강덕호는 이 사건 도메인을 이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도메인을 신청인의 도메인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하거나, 신청인 또는 제3자에게 이를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신청인 상표의 주지·저명성에 편승하여 일반인들을 유인해 성인물 사이트로 접속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 B. 피신청인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아무런 답변이 없다.

##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 A. 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이 사건 도메인은 kolonsport.com로서 신청인의 등록상표들인

 와 비교해 볼 때

그 요부 중의 하나인 문자 부분이 호칭에 있어서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혼동될 정도로 유사하다.

###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신청인이 2007년 1월 19일 이 사건도메인의 등록명의자 이었던 강덕호를 상대로 한 도메인이름분쟁조정신청을 하자, 강덕호는 이 사건 도메인의 등록명의를 피신청인으로 변경하였는바, 전 등록자 ‘강덕호’ 나 피신청인 모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도메인을 인터넷주소창에 입력해서 검색을 수행하면,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몇몇 링크들만 나열되어 있는 웹 페이지가 컴퓨터 이용자의 화면에 표시될 뿐이었고, 이 웹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들은 영화, 우산, 관측물 등과 같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처럼 제3자로부터 도메인이름 등록을 취득한 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하자 있는 권리를 선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이 가지고 있는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 UDRP절차에 따른 WIPO 결정 사례 참조: Motorola, Inc. vs NewGate Internet, Inc., Case No. D2000-0079,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v. Dusty Brown, Case No. D2004-0491, Video Images, LLC v. Stoebner, Case No. D2004-0887, Caesars World, Inc. v. Chester Vargas/Latin American Financial Holdings Group, Case No. D2005-0362, MC Enterprises v. Mark Segal, Case No. D2005-1270, DHL Operations B.V. v. Karel Salovsky, Case No. D2006-0520)

###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의 등록상표의 한 요부인 'kolonsport'는 신청인이 이 브랜드를 1973년 채택한 이래 이룩한 매출액 규모, 최고 브랜드 수상경력, 대대적인 매체 광고 활동, 스포츠 행사의 후원 등 직접적 간접적 홍보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국내는 물론 해외 일부 국가에서도 널리 알려진 표지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청인의 등록상표이자 널리 알려진 상표의 요부와 동일한 것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수년이 지나도록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도메인이름은 판매용” ("This Domain Name Is For Sale")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표시된 웹페이지로 링크되도록 해 두고 있었던 것은 피신청인의 전 등록자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위해 등록한 것이 아니라 판매를 하거나 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한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아니하며 ‘부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하자 있는 도메인이름등록을 피신청인이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 6. 결정

위에서 검토한 바에 따라,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며,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그리고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므로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본건 분쟁 도메인이름인 <kolonsport.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

남 호 현  
1인 조정부

결정일: 2007년 3월 9일